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허11255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1.

2.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세하

담당변리사 박형근, 조재형

피 고

변 론 종 결 2012. 7. 12.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10. 24. 2009당9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적 사실관계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명칭: 공구흔이 탈착 가능한 구조를 갖는 초음파 솔더링 장치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6. 20./ 2006. 11. 8./ 제646399호
- 3) 특허권자: 원고들
- 4)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들(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들은 2009. 4. 20.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 청구항의 각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2) 그러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922호로 심리한 다음, 2011. 10. 24.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는 직권조사사항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는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의 소송물이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인 이상(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등 참조)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 그 심결취소의 소 자체가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여전히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별지 2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자백간주).

다. 그렇다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문(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심판단계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결

과적으로 위법하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정택수

                 판사      박정훈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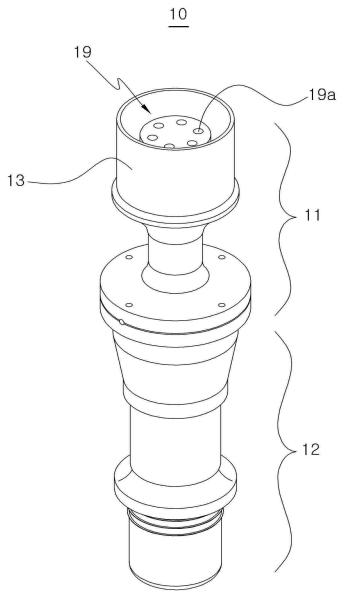
【청구항 1】 초음파 솔더링 장치에 있어서, 솔더(solder)(100)를 저장하며, 저부(21)는 개구되어 단부(220)를 가지며 이 단부(220) 주위에 체결공(222)이 형성된 납조(20)와, 상기 납조(20)의 단부(220)에 위치되는 후육부(13a)가 상부에서 외측으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납조(20)의 개구된 저부(21)를 통해 상, 하부 혼(11, 12)이 연통되며, 상기 납조(20) 내부에 위치되는 전달자(19) 및 코어(13)를 통해 상기 납조(20) 내부로 초음파 진동을 전하는 공구혼(10)과, 상기 공구혼(10)에 끼워지고 상기 납조(20)의 저부에 위치되는 클램프(40)와, 몸통부(51)와 머리부(52)로 이루어지며, 몸통부(51)가 상기 납조(20)의 체결공(222)을 관통하고 상기 클램프(40)에 회동결합되어 상기 공구혼(10)을 상기 납조(20)에 밀착시켜 결합하는 볼트(50)와, 상기 공구혼(10)의 후육부(13a)와 상기 단부(220) 사이에 개재되는 제1실링금속(60) 및 상기 볼트(50)의 머리부(52)와 상기 납조(20)의 저부(21) 사이에 개재되는 제2실링금속(7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구혼이 탈착 가능한 구조를 갖는 초음파 솔더링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납조(20)의 단부(21)에 종단면(221)과 횡단면(223)이 형성되고, 상기 공구혼(10)의 후육부(13a) 선단부(13b)는 상기 횡단면(223)에 안착될 수 있도록 횡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2실링금속(70)은 상기 납조(20)의 횡단면(223)과 상기 공구혼(10)의 후육부(13a) 선단부(13b) 사이에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구혼이 탈착 가능한 구조를 갖는 초음파 솔더링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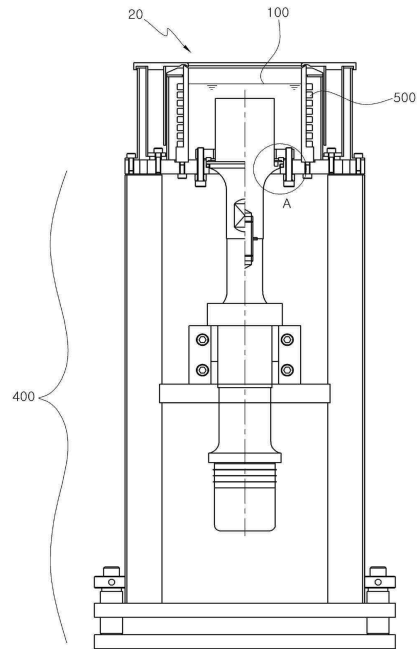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클램프(40)는, 클램프 바디(41) 및 상기 클램프 바디(41)와 상기 후육부(13a)의 선단부(13b) 사이에 개재되는 클램프 이(jaw)(42)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구혼이 탈착 가능한 구조를 갖는 초음파 솔더링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실링금속(60)(70)이 SUS303 스테인리스강, 상기 납조(20)가 SUS420J2 스테인리스강 및 상기 공구혼(10)이 티타늄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구혼이 탈착 가능한 구조를 갖는 초음파 솔더링 장치.

## 2. 주요도면



[도면 1] 공구혼의 개략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면 2] 초음파 솔더링 장치를 나타내는 단면도

끝.

## [별지 2]

### 확인대상발명

1. 명칭: 초음파 솔더링 장치에 장착되는 공구혼

#### 2. 상세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부분단면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공구혼(110)은 상부혼(111)과 하부혼(112)으로 형성되며, 상부혼(111)의 상부면에 안내홈(113)이 제공되어 납조(200)에 초음파 진동을 전달한다. 상부혼(111)의 하부측 외주면에는 절곡된 플랜지(317)가 연장 형성된다. 상기 확인대상발명이 초음파 솔더링에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고적으로 도 2의 확인대상발명이 장착된 초음파 솔더링 장치의 단면도 및 도 3의 "A"부분 확대 단면도를 제시한다. 납조(20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우스(215)의 상부에 장착되어 지지된다. 납조(200)의 외측면에는 납조(200) 내부에 저장되는 솔더(solder)(211)의 온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히터(213)가 장착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납조(200)는 그 저부가 개구되어 공구혼(110)의 상부혼(111)이 관통하게 되며, 납조 저부(217)에는 결합단부(323)가 내측으로 돌출형성되어, 이 결합단부(323)에 공구혼(110)의 플랜지(317)가 적치된다. 납조저부(217)에는 체결공(319)이 천공된다. 클램프(310)는 클램프 바디(311) 및 클램프 바디(311)와 플랜지(317)의 사이에 개재되는 클램프조(jaw)(312)로 이루어져서, 상기 공구혼(110)에 끼워진다. 볼트(327)는 나사부와 머리부로 이루어지며, 나사부가 상기 납조(200)의 체결공(319)을 관통하여 상기 클램프(310)에 체결되어 공구혼(110)을 납조(200)에 결합시킨다. 제1실링

재(321)는 공구혼(110)의 플랜지(317)와 납조(220)의 결합단부(323) 사이에 개재된다. 제2실링재(325)는 볼트(327)의 머리부와 상기 납조저부(217) 사이에 개재된다. 다음으로, 공구혼(110)과 납조(200)의 결합 방법을 설명한다. 공구혼(110)을 납조(200)의 개구부를 통하여 납조(200) 하측으로 삽입하여, 상부혼(111)의 상단부를 납조(200) 내부에 위치시키며, 공구혼(110)의 하부 혼(112)은 납조(200)의 아래 위치에서 납조(200)를 지지하는 하우징(215)의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납조(200)의 결합단부(323)에 제1실링재(321)를 설치한다. 제1실링재(321) 위로 플랜지(317)를 설치하여 공구혼(110)이 결합단부(323)에 안착되게 하고, 그 위로 공구혼(110)의 상단부를 통해 클램프(310)를 끼워 클램프조(312)가 플랜지(317) 선단에 위치되도록 하여, 클램프조(312)가 클램프 바디(311)와 플랜지(317) 사이에 개재된다. 이어서, 납조저부(217) 체결공(319)을 통하여 볼트(327)를 체결한다. 이때, 볼트(327)를 삽입하기 전에 볼트(327)의 머리부와 납조저부(217) 사이에 제2실링재(325)를 설치한다. 볼트(327)를 회동 삽입하면 나사부가 납조(200)의 체결공(319)을 관통하여 클램프(310)에 회동 결합됨으로써 공구혼(110)을 납조(200)에 밀착시키게 된다. 즉, 볼트(327)를 회동 삽입하여 클램프 바디(311)의 체결공(313)을 통해 체결하면, 클램프(310)와 볼트(327)가 서로 압착되면서 클램프조(312)가 공구혼(110)의 플랜지(317)를 가압하여, 플랜지(317)가 제1실링재(321)과 함께 압착된다.

### 3. 주요 도면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공구혼의 부분단면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공구혼이 장착된 초음파 솔더링 장치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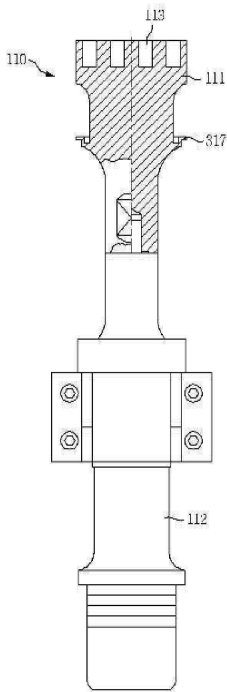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공구혼, 111: 상부혼, 112: 하부혼, 113: 안내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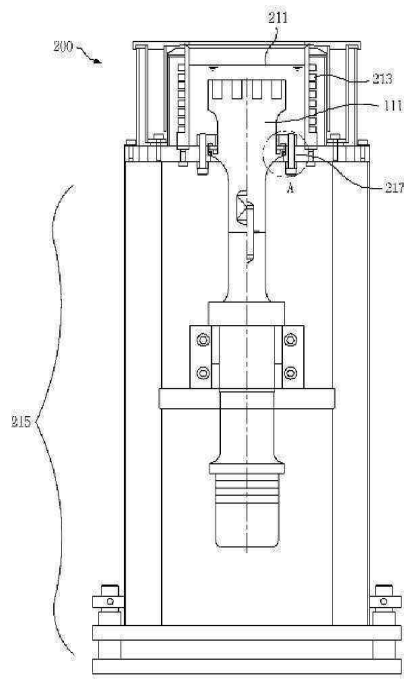
200: 납조, 211: 솔더, 213: 히터, 215: 하우징, 217: 납조저부,

310: 클램프, 311: 클램프 바디, 312: 클램프쇼, 313: 체결공, 317: 플랜지, 319: 체결공,

321: 제1실링재, 323: 납조결합단부, 325: 제2실링재, 327: 볼트.



[도 1]



[도 2]

끝.